요양 (보상) 급부

노동자가 업무 또는 통근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요양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요양 급부(통근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급부의 내용

요양(보상) 급부에는 「요양 급부」와 「요양비용의 지급」이 있습니다.

- 「요양 급부」는 노재 병원이나 지정 의료기관·약국 등(이하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무료로 치료나 약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현물 급부입니다.
- 「요양 비용의 지급」은 근처에 지정 의료기관이 없는 등의 이유로 지정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에 그 요양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는 현물 급부입니다.

급부의 대상이 되는 요양의 범위나 기간은 어느 쪽도 동일합니다. 요양(보상) 급부는 치료비, 입원료, 이송비 등 통상 요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 포함되며 상병이 치유(증상 고정)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 『치유』 란

신체의 제기관·조직이 건강한 때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한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상병의 증상이 안정되어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1)를 실시해서 그 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2)(「증상 고정」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병의 증상이 투약·이학 요법 등의 치료에 의해 일시적인 회복이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등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라도 의료 효과가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재 보험에서는 「치유」(증상 고정)라고 판단하며 요양(보상) 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란 노재 보험의 요양 범위(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에 준거)로써 인정된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실험 단계 또는 연구적 과정에 있는 치료 방법은 여기에서 가리키는 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의료 효과를 기대할수 없게 된 상태 」란 그 상병의 증상 회복·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청구 수속

●요양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요양을 받고 있는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경유해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를 위한 요양 급부 청구서(양식 제5호) 또는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 급부 청구서(양식 제16호의 3)를 제출해 주십시오.

●요양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를 위한 요양 비용 청구서(양식 제7호) 또는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 비용 청구서(양식 제16호의 5)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약국으로부터 약제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제16호의 5)(2)를, 유도 접골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제16호의 5)(3)를, 침술인 및 뜸치료사, 안마 맛사지 지압사로부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제16호의 5)(4)를, 방문간호 사업자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은 경우에는 양식 제7호(제16호의 5)(5)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정 의료기관 등을 변경할 때

이미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급부를 받고 있는 분이 귀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변경할 때에는 변경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경유해서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요양 보상 급부를 위한 요양 급부를 받는 지정 병원 등(변경) 신고」(양식 제6호) 또는 「요양 급부를 위한 요양의 급부를 받는 지정병원 등 변경신고」(양식 제16호의 4)를 제출해 주십시오.

통원비에 대해서

통원비에 대해서는 상병 노동자의 주거지 또는 근무처로부터 원칙적으로 2㎞(※1)의 통원이고 다음의 ①에서 ③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으로 됩니다.

① 동일 지역내의 적절한 의료기관(※2)에 통원할 때.
② 동일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인접한 지역내의 의료기관에 통원할 때(동일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있어도 인접한 지역의 의료기관이 통원하기 쉬운 때 등도 포함됩니다)
③ 동일 지역내 및 인접한 지역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벗어나 인접한 의료기관에 통원할 때.

※1 편도 2㎞ 미만이라도 통원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적절한 의료기관이란 상병의 진료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가리킵니다.

시효

요양의 급부에 대해서는 현물 급부이기 때문에 청구권의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양의 비용은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휴업(보상)급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요양을 위해 노동할 수가 없으며 그로 인해 임금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휴업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휴업 급부 (통근재해인 경우)가 제4일째부터 지급됩니다.

급부의 내용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휴업 제4일째부터 휴업(보상)급부와 휴업특별지급금이 지급 됩니다.

①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인해
② 노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③ 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보상) 급부＝(급부 기초 일액의 60%) × 휴업 일수
・휴업 특별 지급금＝(급부 기초 일액의 20%) × 휴업 일수

또한 휴업 첫날부터 제3일째까지를 대기 기간이라고 하며 이 사이에는 업무 재해인 경우 사업주가 노동기준법의 규정에 근거해 휴업 보상(1일당 평균 임금의 60%)을 하게 됩니다.

또한 통원을 위해 노동자가 소정 노동 시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노동할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에서 그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액을 공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휴업보상급부지급 청구서」(양식 제8호) 또는「휴업급부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6)을 제출해 주십시오.

시효

휴업(보상) 급부는 요양을 위해 노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는 날마다 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다음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상병 (보상) 연금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 개시후 1년 6개월을 경과한 날 또는 그 날 이후 다음 조건에 해당할 때 상병 보상 연금(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상병 연금(통근 재해인 경우) 이 지급됩니다.

(1)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낫지 않았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상병 등급표의 상병 등급에 해당할 것

급부내용

상병 등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 상병 특별 지급금 및 상병 특별 연금이 지급됩니다.

상병 등급	상병(보상)연금	상병 특별 지급금(일시금)	상병 특별 연금
제1급	기초 일액의 313일분	114만엔	산정 기초 일액의 313일분
제2급	〃 의 277일분	107만엔	〃 277일분
제3급	〃 의 245일분	100만엔	〃 245일분

연금 지불월

상병(보상)연금은 상기(1),(2)의 지급조건에 해당하게 된 달의 다음달분 부터 지급되며 매년 2월,4월,6월,8월,10월,12월 6기에 각각의 이전 2개월분이 지불됩니다.

※ 상병 등급이 제1급 또는 제2급인 흉복부 장기,정신·신경 장해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분은 개호(보상) 급부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P32)

청구수속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부지급의 결정은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의 직권에 의한 것으로 청구 수속은 필요하지 않지만 요양 개시후 1년 6개월을 경과해도 상병이 낫지 않은 때에는 그 후 1개월 이내에 「상병 상태 등에 관한 신고」(양식 제16호의 2)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 (보상) 급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이 나았을 때 신체에 일정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해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장해 급부(통근 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급부내용

잔존 장해가 장해 등급표에 설명된 장해 등급에 해당될 때 그 장해 정도에 따라 각각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장해 등급 제1급에서 제7급에 해당될 때
　장해(보상) 연금, 장해 특별 지급금, 장해 특별 연금
● 장해 등급 제8급에서 제14급에 해당될 때
　장해(보상) 일시금, 장해 특별 지급금, 장해 특별 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급부		장해특별지급금(※)		장해특별연금		장해특별일시금	
제1급	연금	급부기초일액의313일분	일시금	342만엔	연금	산정기초일액의 313일분		
제2급	〃	〃 277일분	〃	320만엔	〃	〃 277일분		
제3급	〃	〃 245일분	〃	300만엔	〃	〃 245일분		
제4급	〃	〃 213일분	〃	264만엔	〃	〃 213일분		
제5급	〃	〃 184일분	〃	225만엔	〃	〃 184일분		
제6급	〃	〃 156일분	〃	192만엔	〃	〃 156일분		
제7급	〃	〃 131일분	〃	159만엔	〃	〃 131일분		
제8급	일시금	〃 503일분	〃	65만엔			일시금	산정기초일액의 503일분
제9급	〃	〃 391일분	〃	50만엔			〃	〃 391일분
제10급	〃	〃 302일분	〃	39만엔			〃	〃 302일분
제11급	〃	〃 223일분	〃	29만엔			〃	〃 223일분
제12급	〃	〃 156일분	〃	20만엔			〃	〃 156일분
제13급	〃	〃 101일분	〃	14만엔			〃	〃 101일분
제14급	〃	〃 56일분	〃	8만엔			〃	〃 56일분

※ 동일 재해에 의해 이미 상병 특별 지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됩니다.
※ 장해등급이 제1급 혹은 제2급의 흉복부장기,정신·신경 장해를 가진 분이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보상)급부를 수급할수 있습니다.(→P32)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장해보상급부지급 청구서」(양식 제10호) 또는「장해급부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7)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효

장해(보상)급부는 상병이 나은 날의 다음날 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장해 등급표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제1 장해 등급표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1급	해당 장해가 있는 기간 1년당 급부 기초 일액의 313일분	1 양눈을 실명한 자 2 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을 잃어버린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4 흉복부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 5 삭제 6 양쪽 상지를 팔꿈치 관절이상 잃어버린 자 7 양쪽 상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8 양쪽 하지를 무릎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9 양쪽 하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제2급	동 277일분	1한 눈을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양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의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경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2의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수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3양쪽 상지를 손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4양쪽 하지를 발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제3급	동 245일분	1한 눈이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을 잃어버린 자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 노무를 할 수 없 는 자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자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 노무를 할수 없는 자 5양손 손가락 전부를 잃어버린 자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4급	동 213일분	1양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3양쪽 귀의 청력을 전부 잃어버린 자 4하나의 상지를 팔꿈치 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5하나의 하지를 무릎관절 이상 잃어버린 자 6양손의 손가락 전부를 사용할 수 없는 자 7양발을 리스프랑 관절이상 잃어버린 자
제5급	동 184일분	1의 1 한 눈이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1의 2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특히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1의 3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특히 가벼운 노무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2하나의 상지를 팔 관절 이상 잃어 버린 자 3하나의 하지를 발 관절 이상 잃어 버린 자 4하나의 상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5하나의 하지를 전혀 쓸 수 없는 자 6양발의 발가락 전부를 잃어버린 자
제6급	동 156일분	1양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음식 씹기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3양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으면 큰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3의 2 한 귀의 청력을 전부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를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알아들을수 없을 정도로 된 자 4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운동 장해를 남긴 자 5하나의 상지의 3대 관절 중의 2관절을 쓸 수 없는 자 6하나의 하지 3대 관절 중의 2관절을 쓸 수 없는 자 7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을 포함해 4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자
제7급	동 131일분	1한 눈을 실명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양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를 알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2의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를 알아 들을 수 없을 정 도로 된 자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를 남겨서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4삭제 5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남겨서 가벼운 노무 이외의 노무를 할 수 없는 자 6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한 3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자 7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을 포함해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자 8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이상을 잃어버린 자 9하나 이상의 상지의 의관절을 남기고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긴 자 10하나의 하지에 의관절을 남기고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긴 자 11양발의 발가락 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2외모에 현저한 추태를 남긴 자 13양쪽 고환을 잃어버린 자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8급	급부 기초일 액의 503일분	1한쪽 눈이 실명되고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자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자 4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3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 이외의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할수 없게 된 자 5하나의 하지를 5센티미터 이상 단축한 자 6하나의 상지 3대 관절중의 1관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7하나의 하지 3대 관절중의 1관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8하나의 상지에 의관절을 남긴 자 9하나의 하지에 의관절을 남긴 자 10한 다리의 발가락 전부를 잃어 버린 자
제9급	동 391일분	1양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2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3양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 자 4양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을 남긴 자 5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6음식 씹기 및 언어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6의 2 양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것 6의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으면 큰소리를 알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 소리를 알아듣기가 곤란할 정도로 된 자 7한 귀의 청력을 전부 잃어버린 자 7의 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에 장해를 남기고,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일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되는 자 7의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남기고 가능한 노무가 상당한 정도 제한되는 자 8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어버린 자 9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해 2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3개의 손가락 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0한 발의 제1 발가락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발가락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1한 발의 전부를 사용할수 없게 된 자 11의 2 외모에 상당 정도의 흉한 모습을 남긴 자 12생식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자
제10급	동 302일분	1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1의 2 정면을 바라볼 때 복시가 남는 자 2음식 씹기 또는 언어 기능에 장해를 남기는 자 314개 이빨 이상에 대해 치과 의치를 가한 자 3의 2 양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 소리를 알아듣기가 곤란할 정도로 된 자 4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지 않으면 큰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된 자 5삭제 6한 손의 엄지 손가락 또는 엄지 손가락 이외의 2개의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7하나의 하지를 3센티미터 이상 단축한 자 8한 발의 제1 발가락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9하나의 상지 3대관절중 의 1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는 자 10하나의 하지 3대관절 중의 1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 해가 남는 자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11급	동 223일분	1양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운동장해를 남긴 자 2양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긴 자 3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을 남긴 자 3의 2 치아 10개 이상에 대해 치과 의치를 가한 자 3의 3 양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4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이야기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5척추에 변형을 남긴 자 6한 손의 검지 손가락, 중지 또는 환지를 잃어버린 자 7삭제 8한 발의 제1 발가락을 포함해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쓸 수 없게 된 자 9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를 남겨서 노무의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있는 자
제12급	동 156일분	1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운동 장해를 남기는 자 2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자 3치아 7개 이상에 대해 치과 의치를 가한 자 4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을 결손 한 자 5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변형을 남긴 자 6한 상지의 3대관절중의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7한 하지의 3대관절중의 1관절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8장관골에 변형을 남긴 자 8의 2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자 9한 손의 검지, 중지 또는 환지를 사 용할 수 없게 된 자 10한 발의 제2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제2 발가락을 포함해 2개의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또는 제3의 발가락 이외의 3개의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 11한 발의 제1 발가락 또는 다른 4개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12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남긴 자 13삭제 14외형에 추한 형상을 남긴 자
제13급	동 101일분	1한 눈의 시력이 0.6 이 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을 남긴 자 2의 2 정면시 이외에서 복시를 남기는 자 3양눈의 눈꺼풀의 일부 에 결손을 남기거나 또는 눈썹이 빠진 자 3의 2 치아 5개이상에 대해 치과 치의를 가한 자 3의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자 4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5한 손의 엄지손가락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자 6삭제 7삭제 8한 하지를 1센티미터 이상 단축한 자 9한 발의 제3 발가락 이하의 하나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자

장해등급	급부내용	신체장해
제13급	동 101일분	10한 발의 제2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제2 발가락을 포함한 2개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또는 제3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
제14급	동 56일분	1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을 남기거나 또는 눈섭을 남긴 자 2치아 3개 이상에 대해서 치과 치의를 가한 자 2의 2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소리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자 3상지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를 남긴 자 4하지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를 남긴 자 5삭제 6한 손의 엄지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자 7한 손의 엄지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원위지절간 관절을 굴신할 수가 없게 된 자 8한 발의 제3 발가락 이하의 하나 또는 둘의 발가락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자 9국부에 신경 증상을 남긴 자 10 삭제

비고

1 시력의 측정은 만국식시시력표에 따름. 굴절 이상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정 시력에 대해서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은 자란 엄지 손가락은 지절간 관절 그 외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 관절 이상을 잃은 자를 가리킨다.
3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가락의 미절골의 절반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지절간 관절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것을 가리킨다.
4 발가락을 잃어버린 자란 그 전부를 잃어버린 것을 가리킨다.
5 발가락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란 제1 발가락은 미절골의 절반 이상 그 외의 발가락은 원위지절간 관절 이상 잃은 자 또는 가운데 발가락 관절 또는 근위지절간 관절(제1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절간 관절)에 현저한 운동 장해를 남기는 것을 가리킨다.

장해 (보상)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1회에 한해 장해(보상)연금을 사전지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부내용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은 장해 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액 가운데에서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지불 일시금이 지급되면 장해(보상)연금은 각 월분의 금액(1년을 경과한 이후의 분은 연 5푼의 단리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장해 등급	사전지불 일시금액	
제1급	급부 기초 일액의	200일분,400일분,600일분,800일분,1,000일분, 1,200일분,1,340일분
제2급	〃	200일분,400일분,600일분,800일분,1,000일분, 1,190일분
제3급	〃	200일분,400일분,600일분,800일분,1,000일분, 1,050일분
제4급	〃	200일분,400일분,600일분,800일분,920일분
제5급	〃	200일분,400일분,600일분,790일분
제6급	〃	200일분,400일분,600일분,670일분
제7급	〃	200일분,400일분,560일분

청구수속

원칙상 장해(보상)급부의 청구와 동시에 「장해 보상 연금·장해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청구서」(연금 신청 양식 제10호)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단 연금의 지급 결정의 통지가 있었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장해(보상) 연금을 받은 후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장해 등급에 해당되는 최고한도 금액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시효

장해(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은 상병이 나은 날의 다음날 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장해 (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의 합계액이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일정액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에 대해 장해(보상) 연금 차액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급부내용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의 액수는 장해등급에 따라 정해져 있는 아래의 일정액으로 부터 이미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입니다.
장해특별연금에 관해서도 장해(보상)연금과 동일하게 차액 일시금 제도가 있습니다.

장해 등급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	장해특별연금 차액 일시금
제1급	급부 기초 일액의 1,340일분	산정기초일액의 1,340일분
제2급	〃 1,190일분	〃 1,190일분
제3급	〃 1,050일분	〃 1,050일분
제4급	〃 920일분	〃 920일분
제5급	〃 790일분	〃 790일분
제6급	〃 670일분	〃 670일분
제7급	〃 560일분	〃 560일분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의 (1) 또는 (2)에 게재된 유족이고 지급을 받는 순위는 다음의 (1), (2)의 순서[유족 중에서는 각각(1),(2)에 게재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던 자를 포함.(2)도 동일함.),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 (1)에 해당 하지 않는 배우자, 자식,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장해 연금 차액 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37호의 2)를 제출해 주십시오.청구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제출에 필요한 첨부자료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할 서류	호적 등본 또는 초본등의 청구인과 사망한 노동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사망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날 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유족 (보상) 급부
상제료(상제 급부)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의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해 유족(보상) 급부가 지급 됩니다.
또한 상제를 행한 자에게 상제료(상제 급부)가 지급 됩니다.

유족(보상)급부에는「유족(보상) 연금」과「유족(보상) 일시금」의 2종류가 있습니다.

유족 (보상) 연금

유족(보상) 연금은 수급하는 자격을 가진 유족(수급자격자)중 최우선 순위자(수급권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로 되는 자는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식·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지만 아내 이외의 유족에 관해서는 노동자의 사망 당시 일정의 고령 또는 연소, 또는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노동자의 사망 당시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 하고 있음을 요하지 않고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의 일부를 유지하고 있으면 충분하고 소위 맞벌이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급권자로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내 또는 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남편
②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31일까지의 사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자식
③ 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부모
④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31일까지의 사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손자녀
⑤ 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해가 있는 조부모
⑥ 18세가 되는 날 이후의 최초 3월31일까지의 사이거나 60세 이상 또는 일정 장해가 있는 형제자매
⑦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편
⑧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부모
⑨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부모
⑩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일정의 장해라는 것은 장해 등급 제5급 이상의 신체 장해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경우 혼인 싞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한 사정이 있던 자도 포함됩니다.또한 노동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식은 태어난 때 부터 수급자격자로 됩니다.
※ 최우선순위자가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수급권을 잃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수급권자로 됩니다.
※ ⑦~⑩의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편·부모·조부모·형제자매는 수급권자로 되어도 60세가 되기까지는 연금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급부내용

유족수 등에 따라 유족(보상) 연금, 유족특별 지급금 및 유족특별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그 액수를 등분한 금액수가 각각 수급권자가 받는 금액수가 됩니다.

유족수	유족(보상)연금	유족특별지급금(일시금)	유족특별연금
1인	급부 기초 일액의 153일분(단 55세 이상의 아내 또는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는 아내의 경우는 급부 기초일액의 175일분)	300만엔	산정 기초 일액의 153일분(단 55세 이상의 아내 또는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는 아내의 경우는 산정 기초 일액의 175일분)
2인	급부 기초 일액의 201일분		산정 기초 일액의 201일분
3인	〃 223일분		〃 223일분
4인이상	〃 245일분		〃 245일분

청구수속

관할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보상 연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2호) 또는 유족 연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8)를 제출해 주세요.
또한 특별 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유족(보상) 급부의 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유족(보상)급부와 동일 양식입니다.

●제출에 필요한 첨부 서류 ※그 외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할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사조서 또는 이러한 것 들의 기재사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날짜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 및 다른 수급 자격자와 사망 노동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청구인 및 다른 수급자격자가 사망 노동자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청구인 또는 다른 수급자격자가 사망 노동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일의 사정에 있던 자 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청구인 및 다른 수급자격자 중 일정의 장해 상태에 있 음에 의해 수급 자격자로 된 자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 노동자의 사망시 부터 계속해서 당해 장해 의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수급자격자중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내가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진단서 등 노동자의 사망시 이후 장해의 상태에 있던 것 및 그 장해의 상태가 생김 또는 그 사정이 없어진 때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한 서류
동일의 사유로 유족 후생 연금, 유족 기초 연금, 과부 연금등이 지급되는 경우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효

유족(보상)연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날 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유족(보상) 일시금

(1) 유족 (보상)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노동자의 사망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최후순위자까지 모두 권리를 잃은 때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전원에 대해서 지불된 연금액 및 유족(보상)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액(P29)의 합계액이 급부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

(2) 수급권자

유족(보상) 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은 자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있는 자(②③ 에 대해서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순서)로 동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그 수급권자로 됩니다.

① 배우자

② 노동자의 사망 당시 그 수입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③ 그 외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④ 형제자매

급부내용

상기 (1) 의 ①인 경우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지급 됩니다.

또한 유족특별지급금으로 300만엔이 지급되는 외에 유족특별 일시금으로 산정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지급됩니다.

상기 (1) 의 ②인 경우

급부기초 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 이미 지급 된 유족(보상)연금 등의 합계액을 뺀 차액이 지급 됩니다.

수급권자가 있는 유족 전원에 대해 지불 된 유족특별 연금의 합계액이 산정기초 일액의 1,000일분에 미달 했을 때는 유족특별 일시금으로 산정기초 일액의 1,000일분과 그 합계액과의 차액이 지급 됩니다.(유족 특별 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5호) 또는 유족 일시금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의 9)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 지급금의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유족(보상) 일시금의 청구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양식은 유족(보상) 일시금과 동일한 양식 입니다.

●제출시에 필요한 첨부 서류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사망 노동자와의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 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었던 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 노동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노동자의 사망 당시 유족 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a사망 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사 조서 또는 그 기재사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과 사망한 노동자간의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는 서류
유족 보상 연금의 수급권자가 최후 순위자까지 모두 권 리를 잃은 때에 수급권자였던 유족의 전원에 대해서 지불된 연금액 및 유족(보상)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액의 합 계액이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	상기 b의 서류

※그 외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

유족(보상) 일시금은 유족(보상) 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재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유족(보상)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1회에 한해 연금을 사전지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간년 정지에 의해 연금 지급이 정지된 분도 사전지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급부내용

사전지불 일시금의 액수는 급부 기초 일액의 200일분, 400일분, 600일분, 800일분, 1,000일분 중에서 희망하는 액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지불 일시금이 지급되면 유족(보상) 연금은 각 월분의 금액(1년 지난 후의 분은 연 5푼의 단리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사전지불 일시금의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 정지됩니다.

청구수속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동시에 유족 보상 연금·유족 연금 사전지불 일시금 청구서(연금 신청양식 제1호)를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단 연금의 지급 결정 통지가 있었던 날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이면 유족(보상) 연금을 받은 뒤에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의 1,000일분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범위내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시효

유족(보상)연금 사전지불 일시금은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망한 후의 다음날 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바뀌는 경우(전급)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이유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연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1)사망했을때
(2)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했을 경우
(3)직계 혈족 또는 직계 혼족 이외인 자의 양자(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양자결연 관계와 동등한 사정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된 경우
(4)이연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했을때
(5)자식,손자녀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8세가 된 날 이후의 첫 3월31일이 종료했을때(노동자의 사망 시로부터 계속해서 일정 장해 상태에 있는 때를 제외)
(6)일정 장해 상태에 있는 남편,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그 사정이 없어졌을 때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유족 보상 연금·유족 연금 전급 등 청구서(양식 제13호)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유족 특별 연금의 지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실시 됩니다.
양식은 전급 등 청구서와 동일합니다.

●제출에 필요한 첨부서류

이러한 경우는	첨부서류
반드시 첨부할 것	호적 등본, 초본 등 청구인 및 청구인과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수급자격자와 사망 노동자와의 신분 관계를 증명할 수가 있는 서류
청구인 및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다른 수급 자격자 가운데 일정 장해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수급자격자가 되는 자가 있는 경우	진단서 등 노동자의 사망시로부터 계속해서 해당 장해 상태에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수급자격자 가운데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제료(상제급부)

상제료(상제급부)의 지급대상이 되는 분은 반드시 유족이 아니라도 되지만 통상은 상제를 실시함에 적합한 유족이 해당됩니다.
또한 상제를 진행할 유족이 없고 사제로써 사망 노동자의 회사에서 상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제료(상제급부)는 그 회사에 대해 지급되게 됩니다.

청구내용

상제료(상제급부)의 금액은 315,000엔에 급부 기초 일액의 30일분을 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급부 기초 일액의 60일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급부 기초 일액의 60일분이 지급액으로 됩니다.

청구수속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상제료 청구서(양식 제16호) 또는 상제 급부 청구서(양식 제16호의 10)을 제출해 주십시오.

●청구에 필요한 첨부 서류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또는 그 기재사항 증명서 등 노동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러나 유족(보상)급부 청구서를 제출할 때에 첨부하여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효

상제료(상제급부)는 피재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되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개호 (보상) 급부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제1급인 분 모두와 제2급의 정신신경·흉복부 장기의 장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재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 개호 보상 급부(업무 재해인 경우) 또는 개호 급부(통근 재해인 경우)가 지급됩니다.

지급조건

1 일정 장해 상태에 해당할 것

개호(보상)급부는 장해 상태에 따라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와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로 구분됩니다. 상시 개호 또는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해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분의 구체적인 장해 상태
상시 개호	①정신신경·흉복부 장기에 장해를 남기고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분(장해 등급 제1급 3·4호, 상병 등급 제1급 1·2호) ②·양눈을 실명, 장해나 상병 등급 제1급·제2급의 장해를 가진 분 ·양쪽 상지나 하지를 잃어버렸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분 등①과 같은 정도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인 분
수시 개호	①정신신경·흉복부 장기에 장해를 남기고 수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분(장해 등급 제2급 2호의 2·2호의 3, 상병 등급 제2 급 1·2호) ②장해 등급 제1급 또는 상병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분으로 상시 개 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닌 분

2 현재 개호를 받고 있을 것

민간의 유료 개호 서비스 등이나 친족 또는 친구·지인에 의해 현재 개호를 받고 있음이 필요.

3 병원 또는 진료소에 입원하고 있지 않을 것

4 노인보건시설, 장해자 지원시설(생활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함), 특별요양노인홈 또는 원자폭탄피해자 특별양호홈에 입소하고 있지 않을 것

이들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급부내용

개호(보상)급부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레이와 2 년 3 월 1 일 현재)

(1) 상시 개호인 경우

①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호 비용으로써 지출한 금액 (상한165.150엔)

②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a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써 70.790엔이 지급됩니다.

b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70.790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 70.790엔이 지급됩니다.

c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70.790엔을 윗도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한 165.150엔)

(2) 수시 개호인 경우

①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호 비용으로써 지출한 금액 이 지급됩니다.

(상한 82.580 엔)

② 친족 또는 친구･지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a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써 35.400 엔이 지급됩니다.

b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35.400 엔을 밑도는 경우에는 일률 정액으로 35.400 이 지급됩니다.

c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그 금액이 35.400 엔을 윗도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지급됩니다.(상한 82.580엔)

● 월 도중부터 개호를 개시한 경우

① 개호 비용을 지불해서 개호를 받은 경우 상한액의 범위에서 개호 비용이 지급됩니다.

② 개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친족 등으로부터개호를 받은 경우는 해당월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 10월 도중부터 친족 등으로부터 개호를 받기 시작한 경우

※청구서의「청구대상 년월」란에는 개호를 시작한 월(이 예에서는 10월분)에 대해서도 기입 해 주세요.

청구수속

개호(보상)급부를 청구할 때에는 관할 노동기준감독서장에게 개호 보상 급부·개호 급부 지급 청구서(양식 제16호 2의 2)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에 필요한 첨부 서류

이러한 경우는	해당하는 분의 구체적인 장해 상태
반드시 첨부할 것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단서
개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경우	비용을 지출해서 개호를 받은 일 수 및 비용 액을 증명하는 서류

※그 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수급자 및 장해 등급 제1급 3호·4호 또는 제2급 2호의 2·2호의 3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회째 이후의 개호(보상)급부를 청구할 때에도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호(보상)급부의 청구는 1개월을 단위로 해서 실시하지만 3개월분을 함께 청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시효

개호(보상)급부는 개호를 받은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년을 경과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